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71 발의연월일: 2021. 2. 17.

발 의 자:정점식·하영제·권성동

서일준 • 권명호 • 정운천

박대수・지성호・이종성

곽상도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수산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300kg 이상일 경우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소각 또는 매장하여 처리하도록되어 있으며 300kg 이하일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곳곳에 폐기물들이 처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어 폐기물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이 커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수산물에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로 인해 악취 및 오·폐수가 발생하고, 비위생적인 처리에 의한 국민건강 저해는 물론 도시 품격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해양투기에 대한 조건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처리를 위한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한편 수산부산물은 칼슘, 단백질, DHA 등 유용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재활용 가치가 매우 높아 식품원료와 비료, 사료 등으로 재활용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소각하거나 매장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음.

일본의 경우에는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법률」상 관련 법령에서 특례로 규정하여 허가 절차 등을 간소화하며지방정부는 재활용 공장을 설립하여 이를 식품원료, 비료, 사료 등으로 재활용하여 자원절약을 추진함에 따라 효율적인 수산부산물의 처리및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입법이 시급히 필요함.

이에 수산부산물의 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자원의 절약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간 수산부산물의 발생량 등을 조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6조).
- 다.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 설치된 지역에서 수산물을 어획・채취・

양식·가공·판매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 여 배출하도록 함(안 제7조).

- 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수산부산물 처리업에 필요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 마.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바.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위하여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5조부터 제17조까지).

법률 제 호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 호나목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
- 2. "수산부산물"이란 수산물의 어획·채취·양식·가공·판매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물건을 말한다.
- 3. "수산부산물 재활용"이란 수산부산물을 식품, 비료, 사료, 화장품, 의약품 등 완성품의 원료 등으로 제조·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 4.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란 수산부산물 재활용 및 자원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여 식품원료, 비료, 사료 등을 제조·가공·보관하고수산부산물 재활용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제15조에 따른 시설을말한다.
- 5. "수산부산물 처리업"이란 수산부산물의 수집·운반하는 영업 또 는 수산부산물을 중간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 6.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이란 수산부산물을 수집하여 제15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로 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 7.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이란 수산부산물을 세척,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 장 폐기물을 포함하여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차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부산 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수산부산물의 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 수산부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 3. 수산부산물의 향후 발생 예상량 및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

적정 처리 계획(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 4. 수산부산물의 발생 억제 목표 및 목표 달성 방안
- 5. 제15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과 처리시설에 대한 현황 및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6.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처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 7. 그 밖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조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조사결과를 시·도지 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 1. 연간 수산부산물의 발생 예상량 및 총 발생량
 - 2. 연간 수산부산물의 처리실적
 -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의무) ① 제15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 화시설이 설치되었거나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한 설비 및 장비가 구축된 시·도에서 수산물을 어획·채취·양식·가공·판매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수산부산물분리배출자"라 한 다. 이하 같다)는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8조(수산부산물 분리 배출 시설 지원) ① 시·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분리 배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분리배출자에게 수산부산물을 분리 배출하기 위한 시설·인력고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분리 배출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수산부산물 처리업의 등록) ①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수산부산물 처리업에 필요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해양수산

부렁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른 사람에 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수산부산물 처리업의 지위 승계) ① 수산부산물 처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시설·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수산부산물 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하되.

제9조제1항 중 "등록"은 "신고"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아니하다.

- 제11조(수산부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① 수산부산물 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수산부산물과 다른 폐기물의 분리에 관한 사항
 - 2. 수산부산물 처리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 3. 수산부산물 처리시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효율적인 수산부산물 처리와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수산부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처리 방법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2조(수산부산물 처리업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이 법 또는「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이 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제13조(수산부산물 처리업 등록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수산부산물 처리업자(제10조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2. 제12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 4.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 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5.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6. 제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

경한 경우

- 7.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8.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수산부산물 처리업자에 대한 경비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 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의 기준,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를 해당 지역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내 수산부산물 배출 수요에 맞게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도지사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자원화시설의 기능 등) ① 자원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한 가공 처리 보관 판매
 - 2. 수산부산물 재활용기술 연구 · 개발
 - 3. 수산부산물에서 유용한 영양소 추출
 - 4. 수산부산물 재활용 교육·홍보 및 정보제공
 - 5. 그 밖에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자원화시설은 제1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제17조(재활용제품 판로확대)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자원 화시설에서 생산되는 식품원료, 비료, 사료 등의 재활용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제품 판로확대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권한의 위탁)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부산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9조(벌칙)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수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0조(과태료) ①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수 산부산물분리배출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부산물 처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폐기물 처리업자는 이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까지 제9조에도 불구하고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수행할 수 있다.